

2017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(총괄)

□ 제1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1. 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남구 용현동 627-12 일원 주상복합 신축		
신청위치	남구 용현동 627-12 외 4필지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부결		

- ◆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부결 의견】

《건축분야》

- 각 동(101동, 201동, 202동, 203동) 전면 및 후면부 소방차량 진입 순환 동선 미확보.

-이하여백-

□ 제2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1. 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남구 승의동 180-6 일원 주상복합 신축		
신청위치	남구 승의동 180-6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고층 아파트로 인해 축구경기장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.(예: 그림자의 영향, 바람의 영향)
- 커뮤니티 시설은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위해 설치한 D·A를 선큰(Sunken) 등으로 설치하여 적극 반영할 것.
-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의 규모(변기 및 세면기 등)를 최대한 확대할 것.

《교통분야》

- 사업지 동측 석정로의 입주자 전용 출입구는 방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시설물 등 안내체계를 보강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

□ 제3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1. 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동구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		
신청위치	동구 송림동 2, 4번지 일원 송림4구역		
심의결과	건축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고가도로 전면부의 판상형 주동은 가능한 개방감을 확보한 디자인으로 변경 조정할 것.(탑상형 등 고려)
- 102동의 격인 2호세대의 일조권 확보가 불리하므로 북동방향 등으로 배치를 검토할 것.

《교통분야》

- 타워주차장 지상1층의 진출입 동선체계를 명확히 수정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

□ 제4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1. 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동구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		
신청위치	동구 송림동 37-10번지 일원 대헌학교뒤구역		
심의결과	건축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적극 반영할 것.
- 지하주차장 회차공간이 없는 곳은 주차대수(빈공간)를 표시하는 사인 보드를 설치할 것.
- 편토압에 의한 구조는 세밀히 검토하여 수행할 것.

《교통분야》

- 문주 유효높이는 소방차·대형차량(이사짐 차량)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5미터 이상 확보할 것.
- 주출입구 차로운영계획(차로폭 등) 상세도면을 제시할 것.
-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은 실제 이용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및 진출입 동선체계를 확보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5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1. 7.(화)	심의내용	재심의(건축, 교통)
안 건 명	중구 신흥동2가 54-8 생활숙박시설		
신청위치	중구 신흥동2가 54-8번지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부결		

◆ 건축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‘재심의’ 신청된 안건의 심의로써 해당 위원회 심의결과(부결)의 적합여부에 대해 심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【재심의 의견】

- 당초 심의결과는 합당하므로, 신청인의 이의 주장은 이유 없음.

《해당 위원회 심의 의견: 부결 (2017년 제7회 건축위원회)》

- 용적률 완화(1,200 퍼센트) 적용 부적정.(경관·교통·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됨)
- 객실 내 다락방 설치 부적정.
- 건축물의 용도·규모에 대비한 주차대수 부족.

-이하여백-